건설현장 자율점검표

고용노동부

- ’22. 1. 27, 「**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**」이 시행되며,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부터 적용됩니다.
- **중대재해**는 **안전시설물 미설치** 또는 **관리 미흡과** 같은 **직접적 원인**뿐만 아니라, **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·미준수, 작업지휘자 미배치** 등 **관리적 요인**에 의해서도 **발생**합니다.
- **각 건설현장**에서는 위와 같은 **위험요인**을 적절한 방법으로 **제거·대체**하거나 **통제**할 수 있도록 **원청과 하청이 협력**하여 **점검·관리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01 추락예방

점 검 사 항	점검(개선) 결과
○ 안전통로 확보여부 –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유지 여부 – 통로 주변 안전표지 등 통로 표시 상태 ○ 비계 상 추락방지 – 작업발판 구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–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○ 철골작업시 추락방지 – 승강로 설치 상태 –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상태 –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유무 확인 ○ 지붕작업시 추락방지 – 폭 30cm이상 작업발판 설치 상태 –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상태 – 지붕단부 안전난간 설치 유무	

	◦ 개구부 상의 추락방지 – 안전난간, 울타리, 덮개 등 방호조치 설치 상태 – 임시로 안전난간 등 해체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상태 ◦ 추락예방 개인보호구(안전대, 안전모) – 개인보호구 적정 지급 여부 – 지급받은 개인보호구의 적정 착용 여부	

02 공사종류 및 시설물별 조치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토공사	◦ 주변지반에 대한 이상유무 점검 – 지형, 지질, 지하수위, 용수상태, 주위환경의 이상 유무 ◦ 지하매설물 조사 – 가스관, 상하수도관, 전기·통신케이블관 등의 매설 유무 ◦ 설계도서의 검토 – 원지반의 지질상태, 주변여건(지하매설물, 인접구조물 등) 고려 여부 – 흙막이 지보공 보강시의 응력상, 시공상 적합성 여부 ◦ 적정 기울기 준수여부 – 지반조건,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정 굴착 비탈면 기울기 확보 ◦ 측구 및 토공작업구간 배수로 설치 여부 ◦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여부 ◦ 굴삭기, 덤프 등 건설장비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유무	

건설현장 자율점검표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흙막이 지보공	○ 조립도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여부 ○ 조사 및 점검 – 부재접합, 교차부 상태 및 부재의 손상, 변형, 부식, 변위탈락 유무 – 지지점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– 흙막이 판(토류판) 갈라짐, 변형 등 이상 유무 – 용수 유무 – 배면차수 시공시 최하단부의 용수상태 및 조치 여부 ○ 지보공(버팀보, 띠장, 앵커 등)의 안전조치 적용 유무 – 흙막이 상세 조립도 준수 여부 – 버팀대 상부 또는 배면지반에 기계류 또는 자재류 등 중량물 적치 유무 – 육안 확인 시 지보공의 이상 징후(휨, 비틀림, 배부름 등) 발생 유무 ○ 배면공동 충진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실시 여부 ○ 계측관리 실시 여부 및 계측항목, 주기, 기준치 초과여부 확인 ○ 흙막이 판 설치 시 확인사항 – 흙막이 판 배면의 공극 유무 –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 판이 젖은 부위 보강 여부 – 흙막이 판 연결사용 금지조치 이행 여부 – 굴착과 동시에 지보공 적기설치 여부	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굴착 비탈면	○ 굴착 비탈면 지반상태의 적정성 – 비탈면 기울기의 적정성 여부 –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으로 절리, 균열부위 발생 등 비탈면 상태의 이상 유무 – 토석의 붕괴, 낙반위험에 대한 조치 여부 – 비탈상부 노면수 유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(배수로 측구, 사면 천막비닐 설치 등)	
지반	○ 침하, 균열, 변형 여부 점검실시 – 현장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 점검 – 침하, 균열, 변형 발생시 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– 중장비 사용 전 지반 및 가설도로 지내력 확보 방안 수립 여부 ○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, 전락방지 조치 실시 여부 ○ 비계 또는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– 외부비계의 연결부, 접속부의 분리·변형 및 클램프 이완 등 – 지반 침하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변형	
비계	○ 비계 조립상태의 이상유무 ○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○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○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○ 비계기둥의 침하·변형·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	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타워크레인 등 현장시설물	○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기준 준수 – 순간풍속 10m/s 초과 시 설치·해체, 수리, 점검작업 중지 – 순간풍속 15m/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 – 순간풍속 30m/s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 이상유무 점검 ○ 강풍에 대비한 사전 안전 점검 –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지지 보강 – 가설울타리, 가설사무실 지붕 등의 고정상태 및 지지 보강 – 강관비계 벽이음 상태 점검 – 갱폼 및 수직보호망 등이 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조치 – 각종 가설물, 표지판, 자재 등은 견고하게 결속	

03 질식·중독 및 화재·폭발 예방조치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질식 및 방동제 중독	○ MSDS 교육 실시 여부 ○ MSDS 경고표지 부착 여부 ○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할 경우 소분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여부 ○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밀폐공간 출입·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 – 콘크리트 양생 구간, 가설숙소, 지하 정화조, 저수조, 맨홀, 지하주차장 등 ○ 밀폐공간 내 환기·통풍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○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여부 –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, 환기실시 – 유기용제 사용작업장 주변 담배, 모닥불 등 화기 사용금지 – 작업장소 출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○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배치 및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 구축 여부	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일반적인 화재예방	○ 가설숙소, 현장사무실 및 창고 점검 –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적재 금지 – 화기 주변 및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, 방화사 등 진화장비 비치 – 전기기계·기구의 누전차단기 설치 ○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여부 ○ 꽂음접속기,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○ 작업장의 소화기 비치 여부 – 흡연장소,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– 작업장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비치 ○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,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○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설치 여부 ○ 주기적인 근로자 비상대피훈련 실시 여부 ○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	
용접·용단작업	○ 작업 시작 전·재시작 전 가스농도 측정 ○ 용접·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,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○ 불꽃,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○ 단열재 주변 용접·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○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,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·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·용단 작업 진행 여부 ○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,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○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	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폴리우레탄폼 사용 작업	○ 우레탄 폼 시공 전에 가스, 전기용접 등 화기사용 작업 선행 시공 등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공정분리 이행여부 – 가스용접과 같은 화기작업을 마친 후에 우레탄 폼 마감작업을 하여야 하고, – 부득이한 경우 화기작업 전 충분한 환기 실시, 불티 등이 우레탄폼 표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정한 차폐시설 설치 ○ 우레탄 폼을 사용, 시공하기 전·중·후에 현장 내 모든 협력업체와의 안전정보를 공유 여부 – 우레탄 폼에 의한 화재특성,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는 절차 구축,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○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은 화기와 철저히 이격하여 사용하고 소화기구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적정여부 – 층고가 높은 장소에는 압력이 높은 중형 소화기 사용 ○ 용접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산방지덮개, 용접 방화포 등 불꽃, 불티, 고온 등을 차폐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 ○ 피복이 손상된 전기케이블은 교체 또는 절연조치하고 단자부 이완에 의한 발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임 여부 ○ 우레탄 분사기를 포함하여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 기계·기구는 부하 측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○ 밀폐된 냉동창고 등은 가스 및 유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작업 전·후에 환기 철저 여부 ○ 우레탄 폼 시공 작업장소에 물질 특성,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비치 및 “경고/주의” 표지판 설치 여부 ○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(소화기에 의한 초기진화 실패 시에는, 즉시 화재장소에서 탈출 교육) 실시 여부	

04 기타사항

점검 대상	점검사항	점검(개선) 결과
TBM	○ 작업 전 T.B.M(Tool Box Meeting) 실시 여부	
주변도로 및 배수시설 등	○ 공사용 가설도로 상태의 적정성 – 노면의 폭 및 요철부분 정비 여부 – 노면의 결빙상태 제거 및 다짐 여부 ○ 도심지 지하철공사 주변도로 상태의 적정성 – 복공판 표면상태의 이상 유무 – 복공판 요철부분 정비 및 필요 장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유무 –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안내표지판 및 경고표지판 부착 여부 ○ 지하매설물 보호조치의 적정성 – 노출 상·하수도 관로, 제수변 및 분기개소에 보온 조치 여부 – 매설물의 노출부에 노면수 유입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– 배관 등 지하매설물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	